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

- 제·개정 이력 -

구 분	개정일	시행일
제 정	2000.7.7.	2000.7.7.
개 정	2000.12.13.	2000.12.13.
	2002.8.19.	2002.8.19.
	2006.1.18.	2006.2.2.
	2010.7.1.	2010.7.1.
	2013.9.26.	2013.9.26.
	2018.12.21.	2018.12.21.
	2020.12.10.	2020.12.10.
	2021.11.1.	2021.11.1.
	2021.12.10.	2021.12.10.
	2022.8.29.	2022.9.30.
	2023.8.2.	2023.9.12.
	2023.10.30.	2023.11.30.
	2024.12.19.	2025.1.20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"정보통신망법"이라 한다)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(이하 "결제원"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(이하 "YesKey 인증서비스"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·가입신청자·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입자"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결제원으로부터 전자서명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2. "가입신청자"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다.
- 3. "이용자"라 함은 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등록대행기관"이라 함은 결제원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,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· 등록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YesKey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" (이하 "준칙" 이라 한다)이라 함은 결제 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종류, 수행방법 및 절차, 이용 조건 및 요금 등 YesKey 인증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무관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한 지침을 말한다.
- 6. "사고정보"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탈취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(IP 및 MAC 주소 등) 및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를 말한다.
- 7. "단말기 지정"이라 함은 단말기(PC, 스마트폰 등)의 기기정보를 등록대 행기관에 등록하고,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 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8. "추가인증"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,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9. "2채널 인증" 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10. "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"라 함은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의 인증서를 결제원 클라우드 보관서버에 저장하고, 필요시 클라우드 보관 서버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가입자의 설비로 이동하여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11. "금융인증서비스"라 함은 가입자가 인증서와 암호화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·보관하고, 클라우드에 등록한 기기(PC,모바일 등)를 통해 가입자가 인증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

- 12. "본인확인기관"이라 함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 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하다.
- 13. "본인확인정보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
 - 가. 가입자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정보, 내외국인 구분정보
 - 나. 연계정보(Connecting Information, CI) : 이용자가 멤버쉽 또는 제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식별정보
 - 다. 중복가입확인정보(Duplication Information, DI) :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해당 가입자의 서비스 중복 가입(신청, 이용)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된 식별정보
 - 라. 기타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에 관한 정보 등
- 14. "본인확인서비스"라 함은 가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요청하고, 결제원이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이 약관은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, 가입자가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 다만,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폐지 등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E-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자가 E-mail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가입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

- 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이용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 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법령 등의 적용)

-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법,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.
- ② 결제원은 준칙을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2장 YesKey 인증서비스 이용

제5조 (서비스 종류)

YesKey 인증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인증서 발급
- 2. 인증서 재발급
- 3. 인증서 갱신
- 4. 가입자정보 갱신
- 5. 인증서 폐지
- 6. 인증서 효력정지
- 7. 인증서 효력회복
- 8. 인증서 목록, 효력정지목록 및 폐지목록 조회
- 9.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
- 10. 전자문서 시점 확인
- 11.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
- 12. 본인확인서비스
- 13. 기타 전자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

제5조의2 (인증서 종류 및 용도)

결제원은 가입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인증서 종류 및 용도는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1. 공동인증서
- 2. 금융인증서

제6조 (인증서 발급 및 관리)

- ①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결제원에서 대면(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)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. 다만,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(ID)과 그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 또는 계 좌번호와 그 비밀번호
 - 2.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
 - 3.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(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 함한다)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
 - 4.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. 다만,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해외 체류자, 법인, 단체, 외국인 또는 점자보안카드 사용자(해당 정보 확인에 동의한 점자보안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)인 경우는 제외
- ②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.
- ③ 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원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발급신청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.
- ④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결제원은 발급신청을 취소한다.
- ⑤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입신청자의 인증서 발급을 제한한다.
 - 1.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경우
 - 2.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

- 3.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
- 4.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한 경우
- 5.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
- 6. 가입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
- 7.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한 경우
- ⑥ 가입자의 인증서 재발급 또는 효력회복 시 신원확인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하다.
- ⑦ 가입자의 인증서 갱신발급 또는 변경 시 신원확인 방법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사용한다.
- ⑧ 가입자의 인증서 효력정지 또는 폐지 시 신원확인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 부분의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사항을 확인한다.

제6조의2 (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)

- ① 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1. 가입자의 신원 확인
- 2. 전자문서의 위 · 변조 방지
- 3.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
- 4. 기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목적별 세부 내용은 등록대행기관 및 이용자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.

제7조 (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)

①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, 휴대폰 번호

-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.
-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
- ③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보관서버에 저장된 자신의 인증서를 삭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8조 (금융인증서비스 이용)

- ①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, 휴대폰 번호, 생년월일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.
- ②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
- ③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.
- ④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적법하게 승인한 자에 한하여 금융인증서를 공유할 수 있다.

제8조의2 (금융인증서비스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)

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한다.

- 1. 가입자의 금융인증서 삭제 요청 시
 - 가. 개인키 즉시 파기
 - 나. 인증서 즉시 분리보관 및 3개월 경과 후 파기
 - 다. 클라우드에 보관된 모든 금융인증서가 삭제된 경우, 최종 클라우드 접속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금융인증서비스 클라우드 계정 정보(성명, 휴대폰 번호, 생년월일) 분리보관 및 그로부터 3개월 후 파기
- 2. 클라우드에 보관된 모든 금융인증서가 만료 또는 폐지 시
 - 가. 해당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개인키 파기
 - 나. 해당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인증서 분리보관 및 그로부터 3개월 후 파기

- 다. 해당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금융인증서비스 클라우드 계정 정보 (성명, 휴대폰 번호, 생년월일) 분리보관 및 그로부터 3개월 후 파기
- 3. 가입자의 금융인증서비스 탈퇴 요청 시
 - 가. 개인키 즉시 파기
 - 나. 인증서 즉시 분리보관 및 3개월 경과 후 파기
 - 다. 금융인증서비스 클라우드 계정 정보(성명, 휴대폰 번호, 생년월일) 즉시 분리보관 및 3개월 경과 후 파기

제9조 (본인확인서비스 이용)

-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제공에 동의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.
- ②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.
- ③ 결제원은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내역을 수집한 가입자 E-mail정보로 통지한다.
- ④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.
- 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거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, 가입자의 거부 해제 이후 제1항의 서비스 이용신청 시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한다.

제10조 (연계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제공)

-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연계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,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 받아 제공한다.
- ② 결제원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망을 연결하고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마다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연계정보

-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여 전달 받는다.
- ③ 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며, 결제원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11조 (이용시간)

- ① YesKey 인증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결제 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,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② 결제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제12조 (결제원의 의무)

-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을 준칙에 따라 최대 24시간 주기로 갱신·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및 금융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에 보관된 가입자의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본인확인정보를 가입자가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결제원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, 이용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이용자가 가입자와 체결한 약관, 계약에 따라 운영·관리·폐기된다.

제13조(가입자, 가입신청자의 의무)

- ① 가입자와 가입신청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,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

하거나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가입자는 타인의 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는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개인정보보호)

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YesKey 인증서비스, 인증서부정발급 및 금융사고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1. 정보주체인 가입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2.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

제4장 이용제한

제15조 (인증서 폐지 사유)

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한다.

- 1.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
- 2. 가입자의 사망·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3.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범위에 인증 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 를 발급받은 경우
- 4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
- 5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
- 6.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된 경우
- 7. YesKey 인증서비스 보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가입자명, 고유식별정보 등 가입자의 주요 정보가 결제원에 등록된 정보 와 불일치할 경우

- 9. 금융인증서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계정 전화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
- 10. 가입자가 개인 금융인증서를 삭제하는 경우
- 11. 기타 가입자가 이 약관 제13조 및 준칙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제16조 (서비스 이용제한)

결제원은 가입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 등을 통해 YesKev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장 수수료

제17조 (인증서 발급수수료)

- ①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게시하고,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결제원은 인증서의 종류,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, 수수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 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 (기타 서비스수수료)

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, 전자문서 시점 확인, 본인 확인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해당 수수료 는 결제원과 이용자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.

제19조 (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)

-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다.
 - 1.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
 - 2. 인증서 발급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
 - 3.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또는 발급일 당일 포함 7일이 경과하였으

- 나, 결제원 또는 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
-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.

제6장 손해배상 등

제20조 (정보수집 및 이용)

-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YesKey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한다.
- ② 결제원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 대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.
- ③ 결제원은 등록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등록대행기관은 결제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1. 인증서 신청(발급/효력정지/효력회복/폐지) 및 처리에 관한 기록
 - 2. 가입신청자가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

제21조 (정보의 공고 및 통보)

-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, 전자우편(e-mail) 또는 전화(휴대폰 포함)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.
 - 1. 인증업무 휴지, 정지 또는 폐지,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취소 등 전자서 명인증사업자 및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변경
 - 2. 결제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,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한 가입자의 동의 없는 인증서의 폐지
 - 3.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
 - 4.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
 - 5. 인증서의 적용분야 안내 등 인증서의 이용도 제고 및 가입자의 YesKey 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한 정보
 - 6. 인증서 발급, 폐지

- 7. 가입자 개인정보 변경
- 8.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
-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우편(e-mail)주소, 전화번호(휴대폰 포함)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발생 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2조 (배상책임 및 면책)

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이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 다만,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.

제23조 (관할법원)

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(2018.12.21.)

이 약관은 2018. 12. 2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12.10.)

이 약관은 2020. 12. 1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11.1.)

이 약관은 2021. 11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12.10.)

이 약관은 2021. 12. 1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8.29.)

이 약관은 2022. 9. 3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8.2.)

이 약관은 2023. 9. 12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10.30.)

이 약관은 2023. 11. 3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12.20.)

이 약관은 2025. 1. 20.부터 시행한다.